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의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에 따라 원활한 불법어업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1명(5급 4명, 6급 3명, 7급 3명, 8급 10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신규 항만 순찰선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4명(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항만·연안 방재센터 건립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8월 9일까지에서 2025년 8월 9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과학원의 수산물과학조사선 대체건조에 따라 고강도 투·양망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5명(7급 2명, 8급 2명, 9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개방형직위 중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장을 제외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과학원의 제주수산물연구소를 아열대수산물연구소로 수산물종자육종연구소를 해조류연구소로 명칭 및 기능을 조정하며, 국립수산물과학원 소속 연구소로 고래연구소를 신설하며,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

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해당없음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제주수산연구소장”을 “아열대수산연구소장”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수산종자육종연구소)”를 “(해조류연구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산종자에”를 “해조류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항 및 제4항 중 “수산종자육종연구소”를 각각 “해조류연구소”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 (고래연구소) ① 고래에 관한 전문적인 시험 및 연구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수산물과학원장 소속으로 고래연구소를 둔다.

② 고래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고래연구소의 위치 및 분장사무는 별표 12와 같다.

제38조제1항 중 “수산연구소장 및 수산종자육종연구소장의”를 “수산연구소장의”로, “수산연구소장 및 수산종자육종연구소장 소속”을 “수산연구소장 소속”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4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7퍼센트”를 각각 “10퍼센트”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해사안전관리과장,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장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장”을 “해사안전관리과장 및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장”으로 한다.

제46조제11항 중 “2023년 8월 9일”을 “2025년 8월 9일”로 한다.

별표 8 중 “제주수산연구소”를 “아열대수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11의 제목 중 “수산종자육종연구소의 위치 및 분장사무 (제35조제4항 관련)”을 “해조류연구소의 위치 및 분장사무 (제35조제4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1의 분장사무란 중 “수산종자”를 “해조류”로 한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4를 삭제한다.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1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868”을 각각 “889”로 하고,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38”을 “42”로 하며,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해양수산주사·방송통신주사·전산주사·간호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167”을 “170”으로 하고, 행정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전산주사보·위생주사보·조리주사보·간호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232”를 “235”로 하며, 행정서기·시설서기·공업서기·해양수산서

기·방송통신서기·위생서기·조리서기·간호서기 또는 운전서기 “312”를 “322”로 하고, 행정서기보·시설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위생서기보·조리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107”을 “108”로 한다.

별표 21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870”을 각각 “891”로 하고,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38”을 “42”로 하며,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해양수산주사·방송통신주사·전산주사·간호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167”을 “170”으로 하고, 행정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전산주사보·위생주사보·조리주사보·간호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234”를 “237”로 하며, 행정서기·시설서기·공업서기·해양수산서기·방송통신서기·위생서기·조리서기·간호서기 또는 운전서기 “312”를 “322”로 하고, 행정서기보·시설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위생서기보·조리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107”을 “108”로 한다.

별표 2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263”을 각각 “1,267”로 하고,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사·전산주사·환경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409”를 “411”로 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347”을 “349”로 한다.

별표 25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265”를 각각 “1,269”로 하고,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사·전산주사·환경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410”을 “412”로 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349”를 “351”로 한다.

별표 27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623”을 각각 “628”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616”을 “621”로 한다.

별표 31 중 8. 제46조제1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8월 9일) “2023년 8월 9일”을 “2025년 8월 9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7의 개정사항은 8월 0일부터 시행한다.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고래연구소의 위치 및 분장사무(제36조제4항 관련)

| 위치    | 분장사무              |
|-------|-------------------|
| 울산광역시 | 고래에 관한 시험·조사 및 연구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4]

연구센터의 명칭·위치 및 분장사무(제38조제3항 관련)

| 소속          | 명칭           | 위치          | 분장사무                                       |
|-------------|--------------|-------------|--------------------------------------------|
| 동해수산<br>연구소 | 독도수산<br>연구센터 | 경상북도<br>포항시 | 독도 주변해역 및 동해 심해 수산자원과 생태계에<br>관한 시험조사 및 연구 |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32조(수산연구소) ① (생략)                                                                                                                                                    | 제32조(수산연구소) ① (현행과 같음)                                                   |
| ② 수산연구소에 소장 각 1명을 두고, 동해·서해·남해 수산연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남동해수산연구소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으로, <u>제주수산연구소장은 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u> | ② -----<br>-----<br>-----<br>-----<br>----- 아열대수산<br>연구소장-----<br>-----. |
| ③·④ (생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제35조(수산종자육종연구소) ① <u>수산종자에 관한 전문적인 시험 및 연구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소속으로 수산종자육종연구소를 둔다.</u>                                                                               | 제35조(해조류연구소) ① <u>해조류에</u> -----<br>----- <u>해조류연구소</u> -----.           |
| ② <u>수산종자육종연구소에</u>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 ② <u>해조류연구소</u> -----<br>-----.                                          |
|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
| ④ <u>수산종자육종연구소의</u> 위치 및 분장사무는 별표 11과 같다.                                                                                                                             | ④ <u>해조류연구소</u> -----<br>-----.                                          |

## <신 설>

제38조(연구센터) ① 수산연구소장 및 수산종자육종연구소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수산연구소장 및 수산종자육종연구소장 소속으로 연구센터를 둔다.

②·③ (생략)

제41조(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과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1조제1

제36조 (고래연구소) ① 고래에 관한 전문적인 시험 및 연구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소속으로 고래연구소를 둔다.

② 고래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고래연구소의 위치 및 분장사무는 별표 12와 같다.

제38조(연구센터) ① 수산연구소장의 ----- 수산연구소장 소속-----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1조(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항 단서에 따라 별표 16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7과 같으  
며, 별표 17의 정원 중 6명(행정  
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  
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  
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  
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명,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시설  
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  
송통신주사·환경주사·방재안  
전주사·운전주사 또는 해양수  
산연구사 2명, 행정주사보·해  
양수산주사보·시설주사보·공  
업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  
신주사보·환경주사보·방재안  
전주사보·운전주사보 또는 해  
양수산연구사 3명)은 임기제공  
무원으로 임용한다.

②·③ (생략)

제4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국립해양조사원에 두는 공무  
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9와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그

10퍼센트

②·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9에 따른 총  
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  
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0과 같으  
며, 별표 20의 정원 중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한다.

③ 어업관리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1과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  
에 따라 별표 21에 따른 총정원  
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  
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  
별 정원은 별표 21의2와 같으  
며, 별표 21의2의 정원 중 2명(7  
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  
용한다.

④ (생략)

⑤·⑥ 삭제

⑦ 지방해양수산청에 두는 공무  
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4와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4에 따른 총

10퍼센트

③

10퍼센트

④ (현행과 같음)

⑦

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5와 같으며, 별표 25의 정원 중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⑧ ~ ⑬ (생략)

제44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생략)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해양생태과장, 선원정책과장, 해사안전관리과장,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장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46조(한시정원) ① ~ ⑩ (생략)

⑪ 항만·연안 방재연구센터 건립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8월 9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 10퍼센트-----

⑧ ~ ⑬ (현행과 같음)

제44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해사안전관리과장 및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장-----  
-----  
-----.

제46조(한시정원)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  
-----  
-----  
---- 2025년 8월 9일-----  
-----  
-----.

⑫ ~ ⑮ (생략)

⑫ ~ ⑮ (현행과 같음)

## 신·구정원대비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1]

어업관리단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3항 본문 관련)

| 직 급 별                                                                              | 현 행        | 개정안        | 증 감 |
|------------------------------------------------------------------------------------|------------|------------|-----|
| ·                                                                                  | ·          | ·          |     |
| 총계                                                                                 | <u>868</u> | <u>889</u> | +21 |
| 일반직 계                                                                              | <u>868</u> | <u>889</u> | +21 |
| ·                                                                                  | ·          | ·          |     |
| ·                                                                                  | ·          | ·          |     |
|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br>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br>해양수산사무관                                        | <u>38</u>  | <u>42</u>  | +4  |
|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br>·해양수산주사·방송통신주사<br>·전산주사·간호주사 또는<br>의료기술주사                        | <u>167</u> | <u>170</u> | +3  |
| 행정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br>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방송<br>통신주사보·전산주사보·위생<br>주사보·조리주사보·간호주사<br>보 또는 운전주사보 | <u>232</u> | <u>235</u> | +3  |

|                                                                    |            |            |     |
|--------------------------------------------------------------------|------------|------------|-----|
| 행정서기·시설서기·공업서기<br>·해양수산서기·방송통신서기<br>·위생서기·조리서기·간호서<br>기 또는 운전서기    | <u>312</u> | <u>322</u> | +10 |
| 행정서기보·시설서기보·공업<br>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방송<br>통신서기보·위생서기보·조리<br>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 <u>107</u> | <u>108</u> | +1  |
| ·                                                                  | ·          | ·          |     |
| ·                                                                  | ·          | ·          |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1의2]

어업관리단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3항 단서 관련)

| 직 급 별                                                                              | 현 행        | 개정안        | 증 감 |
|------------------------------------------------------------------------------------|------------|------------|-----|
| ·                                                                                  | ·          | ·          |     |
| 총 계                                                                                | <u>870</u> | <u>891</u> | +21 |
| 일반직 계                                                                              | <u>870</u> | <u>891</u> | +21 |
| ·                                                                                  | ·          | ·          |     |
| ·                                                                                  | ·          | ·          |     |
|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br>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br>해양수산사무관                                        | <u>38</u>  | <u>42</u>  | +4  |
|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br>·해양수산주사·방송통신주사<br>·전산주사·간호주사 또는<br>의료기술주사                        | <u>167</u> | <u>170</u> | +3  |
| 행정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br>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방송<br>통신주사보·전산주사보·위생<br>주사보·조리주사보·간호주사<br>보 또는 운전주사보 | <u>234</u> | <u>237</u> | +3  |

|                                                                    |            |            |     |
|--------------------------------------------------------------------|------------|------------|-----|
| 행정서기·시설서기·공업서기<br>·해양수산서기·방송통신서기<br>·위생서기·조리서기·간호서<br>기 또는 운전서기    | <u>312</u> | <u>322</u> | +10 |
| 행정서기보·시설서기보·공업<br>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방송<br>통신서기보·위생서기보·조리<br>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 <u>107</u> | <u>108</u> | +1  |
| ·                                                                  | ·          | ·          |     |
| ·                                                                  | ·          | ·          |     |

[별표 24]

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7항 본문 관련)

| 직 급 별                                                                                         | 현 행          | 개정안          | 증 감 |
|-----------------------------------------------------------------------------------------------|--------------|--------------|-----|
| ·                                                                                             | ·            | ·            |     |
| 총계                                                                                            | <u>1,263</u> | <u>1,267</u> | +4  |
| 일반직 계                                                                                         | <u>1,263</u> | <u>1,267</u> | +4  |
| ·                                                                                             | ·            | ·            |     |
| ·                                                                                             | ·            | ·            |     |
|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br>·방송통신주사·전산주사·환경<br>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br>방재안전주사                                   | <u>409</u>   | <u>411</u>   | +2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br>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해양<br>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br>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br>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br>학예연구사 | <u>347</u>   | <u>349</u>   | +2  |
| ·                                                                                             | ·            | ·            |     |
| ·                                                                                             | ·            | ·            |     |

[별표 25]

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7항 단서 관련)

| 직 급 별                                                                                         | 현 행          | 개정안          | 증 감 |
|-----------------------------------------------------------------------------------------------|--------------|--------------|-----|
| ·                                                                                             | ·            | ·            |     |
| 총계                                                                                            | <u>1,265</u> | <u>1,269</u> | +4  |
| 일반직 계                                                                                         | <u>1,265</u> | <u>1,269</u> | +4  |
| ·                                                                                             | ·            | ·            |     |
| ·                                                                                             | ·            | ·            |     |
|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br>·방송통신주사·전산주사·환경<br>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br>방재안전주사                                   | <u>410</u>   | <u>412</u>   | +2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br>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해양<br>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br>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br>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br>학예연구사 | <u>349</u>   | <u>351</u>   | +2  |
| ·                                                                                             | ·            | ·            |     |
| ·                                                                                             | ·            | ·            |     |

[별표 27]

국립수산물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9항 관련)

| 직 급 별       | 현 행             | 개정안             | 증 감 |
|-------------|-----------------|-----------------|-----|
| 총 계         | •<br><u>623</u> | •<br><u>628</u> | +5  |
| 일반직 계       | •<br><u>623</u> | •<br><u>628</u> | +5  |
| •           | •               | •               |     |
| •           |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 <u>616</u>      | <u>621</u>      | +5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46조 관련)

| 직 급 별                                        | 현 행                                                                  | 개정안                                                                  | 증 감 |
|----------------------------------------------|----------------------------------------------------------------------|----------------------------------------------------------------------|-----|
| •                                            | •                                                                    | •                                                                    |     |
| •                                            | •                                                                    | •                                                                    |     |
| 8. 제46조제11항 관련<br>한시정원(존속기한:<br>2025년 8월 9일) | 8. 제46조제11항<br><u>관련</u><br><u>한시정원(존속기한:</u><br><u>2023년 8월 9일)</u> | 8. 제46조제11항<br><u>관련</u><br><u>한시정원(존속기한:</u><br><u>2025년 8월 9일)</u> |     |
| •                                            | •                                                                    | •                                                                    |     |
| •                                            | •                                                                    | •                                                                    |     |